

의안번호	2208752
의 퇴 인	강선우의원
회 답 일	2025. 4. 9.
추계번호	25C1421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 - 권역은 인구 규모, 권역 내 피해건수,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- 권역 설정,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절차, 방법,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권역의 범위와 센터별 지원 가능 규모, 추진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가 결정되는데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추가 재정소요 추계가 곤란
 -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16개 시·도에 총 40개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
 -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위기지원형·아동형·통합형으로 구분됨

- 2025년 국비 예산 200억 3,500만원

[표]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) 설치 현황

(단위: 개소)

구 분	합 계	위기지원형	아동형	통합형
전 국	40	17	7	16
서울	5	3	1	1
부산	2	1	0	1
대구	2	1	1	0
인천	3	2	1	0
광주	2	1	1	0
대전	1	0	0	1
울산	1	0	0	1
세종	0	0	0	0
경기	6	2	1	3
강원	3	0	0	3
충북	2	1	1	0
충남	2	1	0	1
전북	3	1	1	1
전남	2	1	0	1
경북	3	2	0	1
경남	2	1	0	1
제주	1	0	0	1

자료: 여성가족부

- 구체적인 권역 설정 기준에 따라 권역의 수가 달라지는데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설정될 권역의 수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인구 규모, 권역 내 피해 건수, 지리적 접근성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권역의 수가 달라짐
 - 참고로, 현재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인 반면,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고,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상북도임
- 여성가족부에 따르면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인력 수 등이 상이하여 센터별 서비스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므로, 사전에 권역별 적정 센터 수를 설정하기 곤란
- 또한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공모

참여 의사에 따라 설치·운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, 권역의 수를 가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권역 내 요건을 충족하고 공모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를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

-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의료기관 내 설치가 원칙이며, 외과 및 산부인과,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와 수사·법률 지원 등이 가능하고, 상담실, 안정실, 진료실, 진술녹화실, 피해자 대기실, 심리평가·치료실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음

- 향후 개정안에 따라 권역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이 의무화되는 경우, 현재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추진할지, 아니면 국립병원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설치·운영할지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, 현 시점에서는 추진 방식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